

## 제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

1. 회의일시 : 2013. 1. 18.(금) 10:00

2. 장 소 : 방송통신위원회 14층 회의실

3. 참석위원 : 이계철 위 원 장

김충식 부위원장

홍성규 상임위원

김대회 상임위원

양문석 상임위원 (5인)

4. 불참위원 : 없 음

5. 회의내용

① 성원보고

② 국민의례

③ 개회선언

④ 회의공개여부 결정

○ 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함

⑤ 지난 회의록·속기록 확인

○ 제1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, 제2차 서면회의의 회의록을 확인하고 접수함

## 6 의결사항

### 가. 「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- (2013-03-008)

- 박재문 네트워크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어려운 법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, 도메인이름 등록시 주민등록번호 수집·이용을 금지하기 위한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함

#### ○ 주요 내용

##### ① 알기 쉬운 용어로 개정

- (개정사유) 법제처(‘12.7.18)의 ‘알기 쉬운 법령 개정계획’에 따라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, 어려운 법 문장을 알기 쉬운 용어로 개정
- (주요 개정내용) ① 한자어를 우리말로 고침, ②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 구성, ③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 한자 병기 등

##### ② 도메인 등록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수집 제한

- (개정사유) 주민등록번호 수집·이용을 금지한 ‘정보통신망법 개정(‘12.2.17개정, ‘12.8.18시행)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 조항 개정
- (개정내용) 도메인이름 등록시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의 등록인 본인확인 방법으로 주민등록증 사본 제출요구를 금지하고, 대체수단을 통해 본인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정

#### ○ 향후일정

- 법제처 심사 : ‘13. 2월
- 차관·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 : ‘13. 3월

### 나. 방송채널사용사업 변경등록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 - (주)투원 미디어 - (2013-03-009)

- 손승현 방송정책기획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법인분할 전에 변경등록을 하지 않아 「방송법」 제15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(주)투원미디어에 대해 고의성이 없고 최초 위반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제2안과 같이 과징금 1,500만원 부과를 의결함

### 다. (주)KT의 전기통신번호관리 질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

- (2013-03-010)

- 석제범 통신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48조제3항에 따른 전기통신번호관리 질서를 위반한 (주)KT에 대해 원안대로 과태료 350만원 부과를 의결함

- 위반내용 : (주)KT가 2011.4.1.부터 2011.11.11.까지 국제전화망 접속을 의미하는 '001(국제전화망 접속 프리픽스 + KT 통신망번호)'을 사용하면서도 실제 착신을 위한 국제번호(국가번호 + 국내번호) 없이 사용한 것은 '001'로 시작된 전화 호는 국제번호로 연결시켜 사용해야 한다는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제10조제1항제1호를 위반

## 7] 보고사항

### 가. 이통 3사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실태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

- 신규가입자 모집금지 위반 관련 KT의 LGU+에 대한 신고건 점검결과 및 이통 3사의 차별적 보조금 지급 행위에 대한 제재조치 이후 시장상황에 대한 점검결과를 정종기 이용자보호국장으로부터 보고 받고, 신규가입자 모집금지의 시정명령을 위반한 LGU+에 대해 “경고” 조치하기로 하고 접수함

- 다만, 이통 3사의 시장상황 점검결과에 관한 사항은 조사대상 및 방법 등을 보완 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하기로 함

### ○ 주요내용

#### ① KT의 LGU+ 신고건

##### (1) 점검 배경 및 대상

- LGU+가 신규가입자 모집 금지기간('13.1.7~1.30) 중에 신규가입자를 모집하고 있다며 KT가 신고서 제출(1.8)
- '13.1.7일 전국에서 신규 개통된 32,571건과 '13.1.7~1.10일 기간 중 명의변경된 3,994건에 대해 신규 모집금지 명령 위반여부를 점검

##### (2) 점검 결과

- 신규가입 32,571건은 신규모집 금지('13.1.7~1.30) 이전 기간인 '13.1.5~1.6일 중 예약 가입된 것으로써 정상적으로 신규가입 처리되었음을 확인
- 명의변경 3,994건 중 13건(0.3%)은 전국 각지 6개 대리점에서 명의변경 방식으로 신규가입자를 모집한 행위로서 시정명령을 위반

##### (3) 조치 방향

- LGU+가 신규 모집금지 기간에 명의변경 방식으로 신규가입자를 모집하는 행위가 일부 확인되었으나
- 그 행위가 일부 영업점(전체 1,925개 대리점 중 6개소)에 국한되고 위반율 (0.3%)이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LGU+에 대해 “경고” 조치
- 아울러, 향후 보조금 지급 관련 위반행위 제재시 추가 가중사유로 반영여부 검토

## ② 이통 3사의 시장상황 점검결과

### (1) 점검 배경 및 대상

- 지난해 말 이통 3사에 대한 제재조치 이후 보조금 시장이 다시 과열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시장과열을 주도한 사업자를 선별하여 시장안정을 도모하고자 실태 점검 실시
- '12.12.25. ~ '13.1.8일(근무일기준 총 9일) 기간 중 이통 3사의 전체 가입건수 1,245,648건 중 1,562건을 추출하여 위법성 여부(27만원 초과) 분석

### (2) 점검 결과

- (평균 위반율) 위법성 판단기준인 27만원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지급한 이통 3사의 위반율 평균은 31.0%이고 사업자별로는 SKT 33.8% → KT 27.9% → LGU+ 25.9% 순임
- (가입형태별 위반율) 시장과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번호이동의 경우 SKT 49.6% → KT 43.2% → LGU+ 22.2% 순으로 SKT의 위반율이 타사에 비해 높게 나타남

## ⑧ 기 타

### 가. 차기 회의 일정에 관한 사항

- o 별도 통지키로 함

## 6. 폐 회 (11:05)